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김문수 · 홍기원  
안도걸 · 이광희 · 안호영  
복기왕 · 이개호 · 허성무  
최혁진 · 정진욱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).



##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”를 “국가유산수리업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”를 “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, 국가유산수리업자·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국가유산수리기술자·국가유산  
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  
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  
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 
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· ⑥ (생략)

함께, 국가유산수리업자·국가  
유산수리기술자가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